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0 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 박대출·강대식·강명구

강민국 · 강선영 · 강승규

고동진 • 곽규택 • 구자근

권성동 • 권영세 • 권영진

김 건 · 김기웅 · 김기현

김대식 · 김도읍 · 김미애

김민전 · 김상욱 · 김상훈

김석기 · 김선교 · 김성원

김소희 · 김승수 · 김예지

김용태 · 김위상 · 김은혜

김장겸 • 김재섭 • 김정재

김종양 · 김태호 · 김형동

김희정 • 나경워 • 박덕흠

박상웅 • 박성민 • 박성훈

박수민 • 박수영 • 박정하

박정훈 • 박준태 • 박충권

박형수 · 배준영 · 배현진

백종헌 • 서명옥 • 서범수

서일준 · 서지영 · 서천호

성일종 · 송석준 · 송언석

신동욱 • 신성범 • 안상훈

안철수 · 엄태영 · 우재준

유상범·유영하·유용원 윤상현·윤영석·윤재옥 윤한홍·이달희·이만희 이상휘·이성권·이종바 이인선·이종배·이종욱 이철규·이현승·인요한 임이자·임종득·장동혁 정동만·정성국·정연욱 정점식·정희용·조경태 조배숙·조승환·조은희 조정훈·조지연·최보윤 최수진·최은석·최형두 추경호·한기호·한지아 의원(108인)

제안이유

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, 국내 주식시장의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(총 1억원)에서 연

4천만원(총 2억원)으로 상향함(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).

- 나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(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)에서 500만원(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)으로 상향함(안 제91조의18제2항).
- 다.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,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(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)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%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(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제129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이 조에서 "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라 한다)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400만원"을 "1천만원(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2천만원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200만원"을 "500만원(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3.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 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,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(이하 이 조에서 "투자대상자산"이라 한다)으로 운용할 것. 다만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.

- 가.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 - 1) 예금·적금·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
 - 2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
 - 3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
 - 4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
 - 5)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
 - 6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- 나.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 - 1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)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
 - 2)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
- 3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중 "1억원"을 "2억원"으로 하고, 같은 호의 계

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천만원 \times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)] - 누적 납입금액

제91조의18제5항 중 "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"을 "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"으로, "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"을 "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중 "이자소득등의"를 "투자대상자산 및 이자소득등의"로 한다.

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 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,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(이하 이 조에서 "투자대상자산"이라 한다)으로 운용할 것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 입할 수 없다.

가.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
- 1) 예금·적금·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
- 2)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
- 3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

증서

- 4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)
- 5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
- 6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의 주식
- 7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- 나.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 - 1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(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)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한다)의 집합투자증권(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포함한다)
 - 2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의 주식
 - 3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-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29조의2제1항 중 "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"을 "제89조의3, 제91조의18(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외한다) 및 제91조의19"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"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"의 개정부분,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① 제91조의1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 - ③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④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4천만원 × (1 + A) + 2천만원 × B - 누적 납입금액

A: 가입 후 경과한 연수 -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

B: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)

- ⑤ 제1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혅 행 개 정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다음 좌에 대한 과세특례) ① 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계좌(이하 이 조 에서 "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 라 한다)에 가입하거나 계약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 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이자 소득등"이라 한다)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.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다. <단서 신설>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이

- 1. 2. (생략)
-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400만원

가. ~ 다. (생 략)
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의 경우: 200만원
- ③ "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

조에서 "국내투자형 개인종합
자산관리계좌"라 한다)에서 발
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
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
아니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
적용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
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
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
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
1
<u>1</u> 천만원(국내투
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의 경우에는 2천만원)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2
<u>500</u> 만원(국내투자형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
우에는 1천만원)
(3)

춘 계좌를 말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 용할 것
 - 가. 예금・적금・예탁금 및

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
 하는 금융상품
 - 나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

 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

 기구의 집합투자증권
 - 다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
 - 라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

 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

 증권 또는 증서
 - 마.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3

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

 의 주식
 - <u>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재산
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,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(이하 이 조에서 "투자대상자산"이라 한다)으로 운용할 것. 다만,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수 없다.
- <u>가.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</u> 산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 - 1) 예금·적금·예탁금 및

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 하는 금융상품
 - 2)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5호에따른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
 - 3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

- <u>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</u> <u>합사채</u>
- 4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

 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

 는 증권 또는 증서
- 5)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
- 6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- <u>나.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</u> 산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 - 1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(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2)에 따른 주 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로 한정한다)의 집 합투자증권
 - 2)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
 - 3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
1	(≥1]	략)
4.	(생	4)

5. 총납입한도가 1억원(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이하이고,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

2천만원 ×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)] - 누적 납입금액

④ (생략)

-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.
- ⑥ ~ ⑪ (생 략)
- 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

4. (현행과 같음)
5 <u>2억원</u>
4천만원 ×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)]
- 누적 납입금액
- 누적 납입금액 ④ (혀해과 간음)
④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 ⑤
④ (현행과 같음) ⑤
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투자대상자</u> 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
④ (현행과 같음) ⑤ 투자대상자 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투자대상자선에서
④ (현행과 같음) ⑤ 투자대상자 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투자대상자선에서
④ (현행과 같음) ⑤ 투자대상자 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투자대상자선에서

(12)

입·연장절차, 가입대상의 확인·관리, <u>이자소득등의</u>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

-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) ①·② (생 략)
 - ③ "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 할 것
 - 가. 예금·적금·예탁금 및

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

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 금융상품

 - 다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증권 또는 증서
 - 라.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

	투자대상자산	및	이자
소득등	의		

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

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3 -----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 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,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(이하 이 조에서 "투자대상 자산"이라 한다)으로 운용할 것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편입할 수 없다.

가.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

- 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)
- <u>마.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</u> <u>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</u> 합증권
- 바.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

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

 권상장법인의 주식
- 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산

- 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 - 1) 예금·적금·예탁금 및

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 하는 금융상품
 - 2)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

 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

 결합사채
 - 3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 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
 - 4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 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(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을 포함한다)
 - 5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 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
 - 6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주권상장법인의 주식
 - 7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재산
 - 나.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

4. (생략)

④ (생 략)

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관리계좌: 다음의 재산

1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

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
집합투자기구(집합투자
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)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)의집합투자증권(국외에서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

- 2)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주권상장법인의 주식
- 3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- 4. (현행과 같음)

다)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

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
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

 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
 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

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 로 한다.

⑥ ~ ③ (생 략)

제129조의2(저축지원을 위한 조 세특례의 제한) ① 제87조제3 항. 제87조의2. 제87조의7. 제8 8조의2, 제88조의4, 제88조의5,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(제87조의7의 경우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의 최초 보유일, 제88조 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 한 취득일로 한다) 또는 연장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「소 득세법 _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 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 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.

日七 口 寸 川 1 1 1 0 0 0 0 一 工 0
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
로 한다.
⑥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29조의2(저축지원을 위한 조
세특례의 제한) ①
<u>제</u>
89조의3, 제91조의18(같은 조
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외
한다) 및 제91조의19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